

제42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6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2)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8)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3)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3)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4)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2)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7)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9)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2)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2)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5)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2)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5)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윤종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1)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9)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0)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4)

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3)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0)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5)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6)
  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0)
  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6)
  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0)
  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0)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8)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7)
  3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
  3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
  4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
  4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
  4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
  4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7)
  4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9)
  4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1)
  46.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
  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6)
  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6)
  4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3)
  5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9)
  51.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3)
  52. 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1)
  53. 교통기본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0)
- 

### 상정된 안건

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 4
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2) ..... 6

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8)	6
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3)	6
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3)	6
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4)	6
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2)	6
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7)	6
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9)	6
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2)	6
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	6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	6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2)	6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5)	6
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2)	6
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5)	6
1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20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22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5)	22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6)	22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3)	22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9)	22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22
2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1)	30
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9)	30
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0)	30
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4)	30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복기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 좀 미숙하더라도 너그럽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배준영 위원님께서 6월 27일 자로 그리고 6월 3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을 하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끝나셨습니까?

○**배준영 위원** 예.

○**소위원장 복기왕** 아주 짧막하십니다.

신영대 위원님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시면 그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따끈따끈한 강희업 차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기왕 교통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부임한 강희업입니다.

최근 대내외적 여건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교통서비스 격차 그다음에 교통안전 강화 등 과제가 산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2차관으로 부임한 만큼 GTX라든지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나가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교통복지를 구현하면서 12·29 여객기 참사라든지 신안산선 붕괴와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안전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긴밀히 상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차관님,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교통 분야 차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와 항상 소통하시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똑같이 정책 설명과정 가지시고 항상 소통을 통해서 국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통 분야가 강 차관님 계시는 동안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 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10시07분)

○**소위원장 복기왕**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첫 번째는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이 연계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상 먼저 한국공항공사법을 심사한 후에 공항시설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 그리고 공사와 국가 등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사가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을 공사에 귀속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시설법은 공사가 그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투입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국가 귀속 조건으로 인해서 해당 토지와 시설 등이 국가에 귀속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항공사는 공항 내의 대부분의 시설과 토지를 사용할 때 국가로부터 별도의 사용·수익 혜택을 매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의 투자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인천공항공사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의된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현행법 체계에 맞춰서 일부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에 대해서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2)
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8)
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3)
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3)
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4)
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2)
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7)
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9)
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2)
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2)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5)
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2)
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5)

(10시10분)

○소위원장 복기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16항까지 이상 15건의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먼저 2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3항에서부터 7항 그다음에 8항에서부터 16항 이 순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알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신 첫 번째 소위 자료 8쪽입니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앞서 심의하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해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공항 건설 시 토지나 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현행 공항시설법에 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심의하신 한국공항공사법이 내용과 같이 개정될 경우에 이와 연계해서 공항시설법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공항시설법 21조 3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해서는 인천공항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재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항시설법도 이와 유사하게 4항을 신설해서 예외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 2항과 관련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할까요, 아니면 전체 죽 다 보고를 받고 나서 할까요?

○정점식 위원 먼저 토론하고……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면 이 2항에 대해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면 2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지금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항의 3항에 ‘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으로 돼 있고 신설한 4항에도 다시 또 ‘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법체계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정합성 있게 하려면 3항과 4항을 통합해서 규정을 하는 게 법의 체계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항에 ‘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법’, 4항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법’…… 이런 불구하고, 불구하고라는 법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원장 복기왕** 이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수** 지금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3항·4항이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항으로……

○**정점식 위원** 한 조항에 합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예, 통합해서 개정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의된 개정안을 수정을 또 한번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할까 싶어서 그냥 뒀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체계·자구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소위원장께 그걸 위임해 드릴 테니까 3·4항을 통합해서 볍조문화하고 나중에 전체회의에 상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항부터 7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에 대해서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총 5건의 법률안과 관련해서 해당 법률안들의 제안 배경을 1쪽이랑 2쪽에 참고자료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바로 3쪽으로 이동해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는 각 개정법률안들의 조문대비표입니다.

11쪽에서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로컬라이저를 포함해서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공항시설들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공항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들이 각 형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왼쪽의 주요 내용 부분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형배 의원께서는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상향 입법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서 ‘활주로 안전구역 내 구조물의 강도는 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항공기의 감속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있으십니다.

김예지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의 설치기준을 상향하면서 같은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하셨으나 일부 표현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민 의원께서는 현재 공항시설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장애물 관련된 기준을 활용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모든 공항 장비 및 시설물은 취약성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취약성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43조를 개정해서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가 충돌하는 경우 항공기의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진석 의원안은 민형배·김예지 의원안과 같은 방식을 택하시면서 공항의 시설 설치기준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공항시설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활주로 인근 구조물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규칙들 간의 정합성이 부족해서 해당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지난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모두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수진 의원안의 경우 법 43조는 현행법 체계상 공항 밖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에 한정되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이 있고.

이해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애물 설치 관련된 지침의 경우에는 공항 내와 공항 외에 있는 장애물 관련 기준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활주로나 착륙대 등 공항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문진석 의원안, 김예지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의 형식으로 공항 시설 설치기준을 직접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23쪽부터 제시해 두었습니다.

먼저 23쪽에 나와 있는 김예지 의원안, 문진석 의원안과 같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라는 정의 규정은 실제로 뒤의 이번에 개정되는 조문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문에서 직접 정의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쪽 하단의 제24조를 개정해서 현재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24조의—25쪽입니다. 25쪽부터 보시면—제1호·2호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26쪽에 나와 있는 3호를 신설해서 3호에다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착륙대의 종단 이후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그와 연접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내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고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할 것’이라는 공항시설 설치기

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문진석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민간협약 및 부속서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규정과 이수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공항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쪽의 부칙에는 현재 이 법 시행일을 개정안들의 시행일을 감안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는 현재 설치돼 있는 공항시설들이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서 정비되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그 해당 필요한 유예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이 법안은 하위법령에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그다음에 연접구역 내 물체의 강도 요건 등을 법률로 상향 명시해서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취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체계 등을 고려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는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에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 그러니까 기존 공항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2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차관님, 그러면 시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공포 후에 유예를 하신다는 건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공포가 늦어져도 기존의 하위법령에 의해서 각 공항마다 항공안전이 충분히 보장돼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 공항에 대해서도 설계라든지 또 예산 확보라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2년이라는 게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시설 그러니까 부칙 제2조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시행일은 6개월이고요 기존 시설 정비를 위한 그것에 대해서는 2년을 유예해 달라는 그런……

○**정점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 취지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정점식 위원** 그러면 결국 부칙 2조를 조금 수정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또 더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3항부터 7항까지의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어서 7항부터 16항까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의사일정 제7항부터 16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입니다. 이 10건들은 모두 공항 내의 조류충돌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번 10건의 개정안들의 내용은 조금 방대해서 두 번째 페이지의 목차에 보시면 1번, 2번을 먼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논의를 하신 후에 3번, 4번을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첫 번째는 각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충돌 방지시설의 설치,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전담인력·장비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쪽으로 이동해서 각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각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조류충돌 방지시설의 설치 근거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장비들의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원의 운용 근거를 상향 입법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모두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조류충돌 방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박용갑 의원께서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정의 중에 조류충돌 방지시설을 추가해서 규정하고 계신데 항행안전무선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국제기준에 따를 때 조류충돌 방지시설이 포함되기 어려운 시설의 종류로 보입니다. 따라서 항행안전무선시설보다는 공항시설의 정의에 조류충돌 방지시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송석준 의원께서는 공항운영자의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계신데 이 공항시설이라는 것은 공항운영자가 아닌 국가, 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공항운영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공항개발사업의 근거 조문, 그러니까 공항시설을 설치하는 근거 조문인 현재 6조와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24조를 개정해서 조류충돌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문진석 의원안은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계신데 이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이나 전담인력·장비 운용 의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이런 구체적인 조류충돌 방지 의무들이 다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선언적 의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실익은 크지 않은 걸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예지 의원안은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공항 운영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의 이행 주체가 국토부장관의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고요, 공항공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뒤에 나오는 조류충돌예방위원회나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

립할 때 모두 이런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았습니다.

21쪽 이하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조류충돌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35쪽에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해서 김예지 의원께서는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송석준 의원안 역시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의원과 김희정 의원안은 국토교통부와 동시에 공항별로 조류충돌 관련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공항별로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류충돌 예방 관련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개정안들의 내용을 종합할 때 각 공항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를 통합 조정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법 수준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전담인력이나 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조류충돌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들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위임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권향엽 의원안과 김희정 의원안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조류충돌 예방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항별로 수립하는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등의 심의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7쪽에 나와 있는 공항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송석준 의원안이나 김희정 의원안에서 현재 고시에서 민간과 군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항은 이러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제외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해서는 민간과 군이 공용하는 공항이라도 동시에 이러한 조류충돌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군 공용 공항에 대해서도 관련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42쪽부터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본 사안은 조류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 입법 취지 및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김도읍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소위원장 복기왕** 예.

○**김도읍 위원** 강희업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감사합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공항별 위원회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송석준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안을 냈는데 현행 고시를 보면 민·군 공용 공항은 의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무래도 군사적 특성을 고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항공실장이 조금 답변을……

○**김도읍 위원** 주 실장님.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가 나고 나서, 저희가 이미 공항별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정비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군 공항에 대해서도 좀 더, 종전에도 군하고의 어떤 협조 체제가 있었습니까만 보다 좀 더 공식적으로 민·군 간에 협력체계를 갖추자 해서 공항 단위의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군도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전에 제외가 되었던 사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종전에 민 중심으로 규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김해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청주공항도 그렇고 실제로 일들은 그 종전에도 군하고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초에 저희가 좀 더 체계를 바로잡았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로컬라이저 공사 다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언제쯤 준공이 다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설계를 지금 하는데……

○**김도읍 위원** 지금 설계 단계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고요.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연내에 완료를 하는 거고 다른 데도 조금 하고 있는데 공항별로 시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준공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공항별로 설계와 관련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 싶은데,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관련해서 당연히 조류충돌 예방 인력이랄지 장비랄지 이런 거 관련한 예산이 수반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차관님, 제가 확인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무안공항에 가서 그 상황도 점검을 하고, 제가 인천공항이 지역으로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조류 관련된 예방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공항 같은 경우에는 46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조류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엽총이라든지 엽견이라든지 음파기라든지 레이저건 같은 걸로 활용을 해 갖고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류의 생태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류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인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항의 활주로를 조류가 이동하는 그 선상에 배치를 하면 충돌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공항의 기능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조류의 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에서도 감안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만금 전략 보고서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 무안보다 조류충돌의 위험이 좀 더 높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전 대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상반기에 대책을 마련해서 그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유인 시설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매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활주로와 조류의 이동경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절차를 이행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계속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복기왕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어서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종수 알겠습니다.

이어서 3번과 4번 목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이춘석 의원안, 문진석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56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모두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진석 의원안에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 개정안 모두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위험성 평가 의무를 지게 되는 자 중에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자의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 작은 규모의 헬기장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행장은 그 규모 및 운항 횟수 등에 차이가 커서 일정 기준 이상의 비행장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58쪽에는 이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송석준 의원, 진종오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류 유인 시설에 대한 이전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그 조류 유인 시설의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6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공항시설법 56조 5항과 그에 따른 하위법령에서는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양돈장, 과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들은 현행법 56조 5항을 위반해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을 공항 주변에 설치한 자에 대해서 국가 등이 이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제재조치가 미비했던 56조 5항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전명령 시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항행안전 확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전명령 등을 하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현재 공항시설법상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를 금지했던 56조 5항이 도입된 이후에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현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명령 등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이전명령 등의 처분의 주체로서 개정안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공항운영자나 비행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범위의 처분주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쪽, 수용·사용 또는 협의매수·사용의 경우에 박용갑 의원께서는 이러한 조류 유인 시설들의 수용·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용·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전제로서 사업 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만 이러한 조류 유인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 인정 대상이 무엇인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송석준 의원께서 제시하신 협의매수 또는 협의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협의매수와는 별론으로, 협의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제도로 보입니다만 협의 사용이라는 제도는 현재 다른 법률에서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고 협의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좀 불확실해지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65쪽입니다.

진종오 의원안은 현재 제재조치가 미비한 56조 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공항시설법 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개

발사업, 즉 공항시설과 관련된 불법 사용 등의 행위에 대한 죄를 모두 상향하시면서 사망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10인 이상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 56조 5항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박용갑 의원이나 송석준 의원안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마련하고 있는데, 진종오 의원안처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자체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볼 때 과태료를 부과할 때 형벌을 신설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종오 의원께서 마련하신 가중처벌과 관련해서는 조류 유인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사망사고 등의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다소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내용들을 종합해서 77쪽부터 수정의견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77쪽의 박용갑 의원안 및 송석준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전명령 조치와 그에 따른 보상 의무에 관한 규정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을 제외하고 송석준 의원안에서 제시된 협의매수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나와 있는 진종오 의원께서 제시한 형의 가중처벌 부분은 삭제를 하고 박용갑 의원안 및 송석준 의원안에 나와 있는 대로 과태료를 금지시설 설치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를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 취지 및 그다음에 비행장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또한 협의매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이 전명령 보상 부분이 좀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조류 유인 시설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복기왕**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조류 유인 시설 금지구역이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있습니다, 지금 3km와 8km로 나눠서……

○**김도읍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3km인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공항 표점은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것은 활주로의 중앙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물리적으로……

○**김도읍 위원** 활주로 길이의 중앙 부분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활주로의.

○**김도읍 위원** 아, 그렇게 정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김도읍 위원** 왜, 실장님 뭐 혹시……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맞습니다. 활주로가 있으면 딱 가운데, 딱 중심을 갖다가 표점으로 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활주로 외의 공항시설은 제외하고 딱 활주로만 놓고 그 중심을 공항 표점으로 봅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차관님, 3km 8km는 뭘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가 알기로는 국제기준 ICAO……

○**송기현 위원** 아니, 왜 3km라고 하냐고요. 4km로 하지 않고 왜 3km로 하고, 2km로 하지 않고 왜 3km로 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국제기준인 ICAO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뒤에 배석한……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 김홍락입니다.

예, 맞습니다. ICAO 국제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송기현 위원** 국제기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예.

○**송기현 위원** 우리하고 사정이 맞아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사정하고 같냐고요. 미국 같은 넓은 나라하고 우리나라 같은 좁은 나라하고 사정이 같냐고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첫 도입할 때는 저희 항공 관련 법령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ICAO 국제기준을 따라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적절성 여부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 13km까지도 관리 대상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규제가 심한 것 아닙니까? 나는 3km도 규제가 심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넓힌다고 그러면 되나요. 3km면 양쪽은 6km 아니에요, 6km?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일단 관리 대상으로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규제라기보다는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대상으로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설이 조류 유인에 관한 인과성이 있다는 것이 확

인이 되나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일단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지금 위원님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3km, 8km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가 12·29 사고가 난 뒤 1월에 전문가들하고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게 지금 시설들이, 이를테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카페 같은 곳도 지금 분류에 의하면 조류 유인 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도 합리적으로, 거리뿐만이 아니고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것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외국 같은 경우 대규모로 농업을 하거나 그런 데는 상당히 인과성이 클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농업을 하고 식당을 하고 그러는 데서 과연 그게 조류…… 조류 한두 마리 있는다고 그런 게 위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대규모 조류가 유입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그게 대규모 조류 유입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보고 대상도 좀 조정을 하면서…… 어떤 규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라고 해서 바로 규제가 들어가는 것도 난센스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조심히 하셔야 되고 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예, 저희 평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도 매년 두 번씩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그것 관련성이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관련성이 있으면 잘 연결해서 법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예.

○**송기현 위원** 법 조문을 관련성 있는 것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예,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의원실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법을 보다 보니까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6조 규정에 보면 뜯금없이 거기에 4항이 들어가 있어요.

39쪽 한번 봐 볼래요?

39쪽에 보면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조류 충돌예방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죽 써 놨는데 4항에 ‘공항운영자는 조류와 야생동물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류와 야생동물 위험관리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추가적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2항부터 또 3~7항까지 그리고 7~16항까지 순서로 토론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데 빠뜨린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송기현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부분은 충돌위원회하고 어떻게 관련돼서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일단 조류……

○**송기현 위원** 매년 같은 것 2개를 중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같으면 공항별로 매년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관리계획 자체를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송기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계획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하고 그 계획이 맞냐, 위험성을 줄이는 데 적정한 계획이냐 이걸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예.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적정하다고 평가를 하려면 계획대로 운영되는 것을 잘 검토를, 평가를 해 봐야지 사실 그게 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56조 새로 만든다는 것, 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하고 어떻게 잘 조율이 돼야 되지 않아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김홍락** 예, 그 운영 과정에서……

○**송기현 위원** 그리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새로 한다는 것은?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별도로 공항 운영하는 데서 따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장 박상민** 국토부 공항운영과장 박상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공항운영자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류 충돌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포획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위험한지 그 정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에 따르면 공항별로 수립하고 있는 이 위험관리계획에 대해서 공항별 위원회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위험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는 1년 동안 공항운영자가 수행하고 있는 위험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공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충돌에 대해서 위험 정도를 분석하는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것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장 박상민**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아니, 하는 주체를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장 박상민** 그 위험성 평가를 공항운영자가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송기현 위원** 거기 보면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려면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위험성도 평가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장 박상민** 그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 2개를 연계해서 조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현재 체제로 보면 조류충돌예방평가위원회에서 위험성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방대책의 적정성도 평가를 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내 의견이거든요.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장 박상민**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예예예’ 하지 말고.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장 박상민** 공항운영자가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심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정점식 위원** 아니, 위원님 말씀은 58페이지 수정의견이 있잖아요. 31조의7에 보면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의 실시 주체가 공항운영자나 공항시설 관리·운영자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와 보고의 주체를?

아니, 조류충돌위험평가위원회를 뒀는데 그 위원회는 따로 두고 왜 공항운영자가 또 평가를 해서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하느냐, 이 평가와 보고의 주체를 위원회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송기현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중 업무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중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장 박상민**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중으로라는 표현보다 도 서로 분리돼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취지실 것 같습니다, 각자 각자.

○**송기현 위원** 각자 각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각자 각자.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또 개별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운영자가 바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문도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게 1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 신설하는 조항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류충돌예방위원회도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장 박상민**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걸 2개를 잘 조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서 매해 위험성 평가를 같이하고 거기에는 여기 2항과 3항과 같은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 놔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복기왕** 송기현 위원님 안을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종수**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51쪽에 보시면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1·2·3·4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말씀하신 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호로 추가해서 이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송기현 위원** 그렇게 하고 2항·3항을 거기 붙여 가지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두면……

○**전문위원 임종수** 이게 지금 공항별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 이걸 근거로 공항별로 수립하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국토부장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과 국토부장관 사이의 커넥션은 지금 수정의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공항별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호를 추가해서 개정하면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잘 만들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5건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

## 1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10시56분)

○**소위원장 복기왕**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의원께서 발의하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총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체계관리계정에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를 신설하는 것과 공항계정에 드론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세출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세출 근거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들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 시장안정기여금을 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2022년부터 수납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교통체계관리계정 내에 이러한 부담금의 수납을 위해서 필요한 세입항목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정부에서 이를 세입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체계관리계정 내에 세입 항목으로 추가해서 이미 수납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의 세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입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이러한 기여금의 용도 자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금은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으로 법률에서 직접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도 세출 항목에 이러한 기여금의 용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공항계정에 드론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인프라 구축 관련한 세출은 이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서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출 근거가 법률상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 역시 공항계정 내에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세출 근거 역시 현재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세출 근거를 공항계정 내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일부 문구를 좀 구체화하고, 이러한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세출 근거가 신설되다 보니 현재 해당 계정의 명칭이 ‘공항계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론이나 UAM에 관한 세출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항공공항계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정합성 확보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수정의견은 10쪽 이하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공항계정에서 항공공항계정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 포섭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저희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로 새로 오신 신영대 위원님, 지역구가 멀어서 좀 늦게 왔다고 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국토위는 처음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염태영 위원님하고 표정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염태용 위원님만 따라다닌다고…… 한 4년 정도 산자위에서 함께 모시고 했다가 기재위에 잠깐 계시다가 또 뺐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국토위에서 다룬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여야 간에 크게 다툼이 있거나 쟁점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간혹 그래도 있다손 치더라도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낸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자세로 앞으로 국토위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5)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6)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3)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9)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11시01분)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3항까지 이상 6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6건입니다. 이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저희 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과 표준운임제 도입에 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먼저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에서 최초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의 여야 합의 그리고 제도의 취지 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안전운임제를 일몰기간 동안 도입했던 시기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안전운임제 도입 후에 일부 통계에서 사고가 증가하였다라는 것이 신뢰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반대하시면서 표준운임제 도입을 찬성하시는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 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하고 결과적으로 대형운수사들의 이윤만 보장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주 보호에 있어서는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가 차이가 없고 보다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등등이 제시되신 바 있습니다.

기타로는 정부가 이해관계자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쪽부터 4쪽까지는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와 관련된 지난 경과와 제도의 개요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건의 개정안의 운임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의원안은 기존의 안전운임제 조문, 일몰된 안전운임제 조문을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다시 규정하면서 일몰되었던 내용을 일몰기한 없이 복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기원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을 보다 확대하고 적용대상 차량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종오 의원안 및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의 경우에는 추가로 안전운임 부대조항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재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원가 심의·의결 시 세부항목 등을 부령으로 위임하고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운임을 공표하지 않도록 하며 원가 등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친 후에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복잡한 법안을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짧게 답변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풍부화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2020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화물차주의 저임으로 인한 과로라든지 과속이라든지 과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요. 품목도 시멘트하고 컨테이너 분야 그 2개밖에 하지 않았고 또 이미 일몰됐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시범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단해야 된다,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화물자동차가 약 한 47만 대 정도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컨테이너·시멘트만 했을 때 해당되는 차량이 한 2만 7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6% 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도 확대하고 일몰제가 아닌 상설화가 되어야지만 최소한의 운임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가 있고 교통사고도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운영은 끝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엄태영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토론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여튼 ‘안전운임제’ 이름은 좋은데 안전에도 별로 기여가 안되고 이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순과 우려를 낳아 왔지 않습니까? 화주와 운수사의 운임까지도 정부가 규율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경제를 훼손한 부분이 있고 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내지는 품목 확대를 주장하면서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본 위원도 발의했지만—표준운임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여야가 바뀌었다고 사회적 합의 비슷하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논의했던 부분이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이 숙고도 했고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코로나 시대에 확실하게 운행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다시 좀 연기하자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마는 표준운임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또 어떤 운수사의 과도한 횡포와 이익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힘쓸 필요는 없다, 그런 갑질을 우리가 방해해야 된다, 그러나 차주는 철저하게 우리가 보호하자 그런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정부에서도 입장을 그렇게 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안전운임제가 처음 논의되고 시행됐던 게 과속·과로 운전에 노출된 대형화물차들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이 매우 커기 때문에 도입이 됐는데 이것이 3년 일몰 뒤에 끝났는데, 그래서 특히 이것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좀 주는 이런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대형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한 것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장점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정부에서 일몰로 시행할 경우 이것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

을 정확하게 통계로 제시를 해서 이것을 논의할 때 논란이 없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더 늘었는지 감소했는지, 소득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를 모든 이해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를 하니까 매우 참 난감한 상황인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다시 얘기하고 계신데 저는 그 근거가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만약에 설사 일몰제로 수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계와 조사를 해서 자료 축적을 해 놓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일몰 단계에서 다시 논의가 될 때 논란 없이 여야가 그리고 각 이해당사자가 논의될 수 있게 준비를 차분히 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차관님 입장은 좀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정부 측 입장은 질문하셔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종오 위원님 말씀 주신 품목 확대, 영구화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품목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하고 있는 것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이후에 확대하자는 건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철강이라든지 카고 이런 부분을 정형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영구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의 사회적 갈등,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3년 일몰제로 했지만 금방 이연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영구화한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은 일몰제로 하면서 좀 더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태영 위원님께서 표준운임제를, 과거 입장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정부 측 입장에서는 사실 차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안전운임제나 표준운임제나, 어느 방식으로 가더라도 차주의 권리가 보호가 된다면 저희들은 팬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안전운임제를 운영을 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한 증빙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운임제를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번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연희 위원님께서 일몰 부분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소득은 분명히 증가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했을 때는. 다만 교통사고 부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일몰제 운영 기간 동안에 좀 감소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일몰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교통사고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성이, 교통사고가 과연 안전운임제로 인해서 더 감소가 됐는지에 대한 경찰청 자료나 이런 분석을 해 봄도 분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이번에 품목은 확대하지 않고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윤종군 위원님.

○윤종군 위원 우리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인데 이 이슈에 대한 논의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또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 저로서는 물론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국가의 중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국토부가 원칙을 좀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 정권에서는 표준운임제 가지고 옹호를 하시고 그랬잖아요, 국토부가. 그리고 정권 바뀌고 나서 바로 태세 전환을 하셨는데 환영은 하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일몰제냐 영구화냐 또 품목 확대냐 지입제냐 이런 논란인데 당연히 저는 일몰제를 포함한, 지금 시행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입법 사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뺨뺑식으로 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에 3년 일몰제로 또 부활해 놓고 논란이 되는, 쟁점이 되는 시기 문제라든가 품목 확대 문제라든가 지입제 문제라든가 더 큰 덩어리들의 이슈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 또 2년간 그냥 방치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방치되다가 또 3년 일몰 앞두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에 가서 어떤 정권의 입장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몰제냐 영구화냐라는 문제 또 품목 확대 문제, 지입제 문제 이런 논란이 뻔한 거잖아요, 이슈가. 새롭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3년 연장해서 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거냐,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부분은 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위낙에 사회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각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해 왔으나 그런 부분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금방 저희 정부 측 입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3년 정도의 일몰제로 운영하면 저희들이 그런 정량화된 것을 좀 분석을 제대로 하고요. 그런 부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입제라든지 여러 가지 근본적 대책이 또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입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문제보다도 갈등이 더 심화된 부분이거든요, 운송사와 또 차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기를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우리 차주들의 피해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우선은 차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로 완만히 하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대상이 되는 분들을 설득하는 기간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와 병행해서 지입제 등 근본적인 대책도 좀 더 열심히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윤종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되는 핵심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

해서 일몰제를 3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적어도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3년 내내 그냥 방치했다가 또 그때 가서 임박해서 땜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과시켜 주면 적어도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안에 어떤 사회적 합의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지금 전혀 제시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각별히 챙기면서 저희가 위원님께 또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윤종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만……

○**소위원장 복기왕**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엄태영 위원님, 그다음에 윤종오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

○**김도읍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윤종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고, 근본적으로 3년간 다시 일몰을 정하고 시행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 이런 취지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지금 화주와 차주 사이에 운수사가 끼어 있는 게, 이게 사례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혼자 않습니다.

○**김도읍 위원** 혼자 않지요? 아주 기이한 이런 구조인데 실제 화주는 화주대로 물류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주는 본인들의 노력과 노고에 비해서 적정한 수익이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이 중간에 지입회사 운수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양쪽에, 화주든 차주든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더 확대한다 어떤다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운수사 제도 이거, 저는 사실 운수사 제도 이거 폐지시켜야 된다.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운수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뭘 하고 있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3년 내에, 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논리를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경우도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화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차주들의 적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운수사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지금?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운수사 폐지 이런 부분보다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아까 지입제 개선 그거 포함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

○**김도읍 위원** 저는 지입제 개선에 있어서 운수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은 하고요.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이런 논란을 정부가 바꿔

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미봉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 이 부분이 하도 논의를 오랫동안 해서 내용 다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지입제 개혁까지 담은 저희의 표준운임제 개혁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 주시고, 지금 여야 간에도 일몰제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의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참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갈등 때문에 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나 윤종오 위원님이나 행정편의주의다, 땀빵식이다 지적을 했듯이 작년에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그때 그 차관님은 가셨으니까 또 새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한다고 그래서 일단 땀빵식으로 2년 유예를 했어요.

이제 얼마, 1년 남짓 남았는데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노파심에 한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때 가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일몰제로 미룰 것인지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사전에 정부의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지금은 서울시만 월급제지요. 나머지 지방은 다 아직도 여러 가지 형태로 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미리미리 연구하셔 가지고 시기 놓치지 않고 입장은 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대부분 일몰제를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몰제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차관님께서 철강의 경우에 정형화가 되지 않아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형화시키는 거야 어떠한 방법이든지, 무게로 하든지 부피로 하든지 차량 종류로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의안의 결과와 관계없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품목 확대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용역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제적으로 안전사고가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워낙 미묘하게 낮은 프로테이지로 시행하다 보니까 유의미한 숫자가 안 나오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하게 연구용역으로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대책도 좀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3년 안이라도 아니면 또 이 안이 의결되고 나면 아마 화물연대에 있는 분들의 불만들 내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있을 텐데요, 우리 국회 내에 이거와 관련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위원장님께서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예.

○**김도읍 위원** 제가 아까 발언 중에 우리 차주들의 적정 수익 보장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 기본요금제를 예시로 했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예시였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예,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을 다 경청해 보니까 어느 한 분의 말씀도 그릇된 말씀이 없으세요. 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화물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법안에 담을까,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일거에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여섯 가지의 법안이 상정돼 있고 이 가운데서 18항 이연희 의원님이 제안한 법안은 우리가 기존에 폐기된, 종료된 법에서 3년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3년 제한을 두어서 그리고 대상 품목도 두 가지 품목으로 한정을 하고 해서—지난번에 코로나 시기였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와 검증이 안 되었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기 때문에—그 법을 우선 살려서 시행하고 나머지 19항부터 23항까지는 여러 주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심사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저의 제안인데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종오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윤종오 위원님께서 반대를 분명히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 의사은 분명히 하시고, 하지만 표결하지 않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윤종오 위원** 제가 반대하는 의견은 남겨 주세요.

○**소위원장 복기왕** 예, 윤종오 위원님께서 반대한 의견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반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차후에 또 충분히 심사를 하고 말씀 주신 국회 내에서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종오 위원님의 반대를 분명히 하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8항은 지금 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위원장님,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의결하신 의사일정 제18항 이연희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일부 인용하는 조문이 좀 잘못된 숫자입니다. 숫자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체계·자구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1)
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9)
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0)
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4)

(11시30분)

○**소위원장 복기왕**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4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심사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입니다. 각 항공안전법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쪽에서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기구류(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을 이용해서 비행하는 장치)들을 초경량비행장치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로서 시행규칙에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자유기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행법은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나 통제공역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규제는 모두 무인자유기구 외부에 2kg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들은 각각의 이런 무인자유기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10쪽 하단에 표로 각 개정안들의 규제들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강 의원께서는 2kg 이상에 관한 규제는 현행과 같이 하고 다만 이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2kg 미만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현행 2kg 이상에 대한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제안하셨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kg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지만 2kg 미만 중에 일정 고도 이상을 비행하거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2kg 미만도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두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2kg 미만에 대해서 규제를 제외하고 있는 이유가 2kg 미만의 소중량이거나 아니면 기상관측장비 등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등 현행법상 규제에서 제외시켜 줘야 될 만한 그런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규제를 제외해 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되는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복기왕 의원님 안과 윤종오 의원님 안의 경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기왕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2kg 이상, 2kg 미만 물체를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 구에 대한 현행 규제는 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특정 목적,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구역,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것만 매단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종오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다른 규제를 현행 그대로 하되 특정 구역, 그러니까 접경지역에서만 외부에 매단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을 제안하신 제안 이유에 따르면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에서 행해지는 풍선을 이용한 전단 등의 살포로 인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즉 매달고 있는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허가 또는 비행승인을 모두 다 받도록 하거나 비행금지구역이나 접경지역에서 비행을 금지하거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해서 현행 규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들이 발의된 배경으로 지난 2023년도 9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였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복기왕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전단 살포용 무인자유기구에 대해서 별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 외에도 무인자유기구 전반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자유기구의 무허가 비행도 현재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미승인 고고도 비행 그다음에 비행금지구역 등에서의 비행 등등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징역형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뭔지 결론을 안 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차관님, 23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소위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일부 개정안들은 명백하게 소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으니까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항공안전법으로 옮겨 와서 개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편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역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규제를 한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대북전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우리 사회에 공존한다는,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소위 북한의 자유를 바라는 그런 단체들이 당분간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언론을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규제하는 것, 지금 현재 소형 무인기구에 대한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도한 제한이다라는 비판 역시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좀 더 사회적인 상황을 보고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인데, 예를 들어 최근에도 계속 이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또 우리가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단 살포하는 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굳이 이 시점에 우리 국토위에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윤재옥 위원님하고 정점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데 저는 그 소수의견 중에 표현의 방법의 문제라는 점에 동의를 하거든요.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리면서, 지난 1년간 저희가 목격한 게 북한에서는 대응해서 오물풍선 날리고 해서 각각이 서울에서까지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설득이 아니라 법으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야당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저는 대북전단을 날리고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준전쟁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일종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전은 전쟁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위헌성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기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현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 법이 발의가 됐을 때 국민 대다수는 다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외의 대북전단 살포에 목숨 거는 몇몇 단체 말고는 이 법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법은 발의되는 대

로 저는 통과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신가요?

○윤종오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그동안 오물풍선 내려올 때마다 온 국민들이 막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물풍선 날아오는 게 가만히 있는데 날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북전단을 보내니까 또 날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의 그동안 행태를 본다면 우리가 대북전단 보내는 것은 거의 방송에 나오지 않고 오물풍선 날아오는 것만 계속 방송을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을 어느 기준에 놓고 해야 될까 하는 그 기준을 흐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혹여나 또 총이나 아니면 다른 무기로 공격할까 이런 밤잠 못 이루는 이런 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오물풍선이 날아오지 않는 이런 대책을 수립했듯이 대북전단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남북관계, 앞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 이 법의 취지나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대치된 상황에서 이런 심리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주민들을 생각할 때 많은 고통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단체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는 성명도 발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도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처벌 조항을 만들면, 또 북한에서 우리는 안 보냈는데 오물풍선 보내면 북한 쪽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처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벌 대 처벌이 아니고 일단은 과거와 달리 남북 간에 지금 다른 분위기가 전전되고 있고 또 그 단체에서도 대북전단 풍선을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법안 통과에 보류를 해 놨다가 여러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통과시켜도 되니까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윤종군 위원님.

○윤종군 위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 변화, 여건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무인기 보내고 이러면서 또 남북 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긴장이 불필요하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최소화하는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 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선의만 믿고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한된 이 정도의 어떤…… 규제지역을 한정하고 위헌성을 제거하고 기상관측용이라든가 교육실험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범위, 이 정도 수준 안에서는 이 법이 좀 통과되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복기왕** 예, 말씀하십시오.

○**윤재옥 위원** 윤종군 위원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해야 된다. 뭐 상황이 변화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고. 이 문제는 왜냐하면 국제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사실 법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제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법으로 규제해서 못하게 하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설득에 응하지 않고 이 행위가 계속되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증폭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합의하는 어떤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오늘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고 또 법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동일 내용으로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입법부가 다시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한다, 이건 사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이든 어떻든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는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되면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농후한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재입법을 한다, 법 제명만 바꾸어서 입법을 한다, 이건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좀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과거 3년의 경험 때문에 지금 이런 법이 발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전쟁에 가까운 심리전을 펼치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오물풍선까지 날리고 서울의 시민까지도 피해를 보는, 정말로 전쟁 위기 상황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헌 얘기 말씀하시면서 좀 신중

하게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약도 받고 이런 행동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위헌 말씀을 해 주셔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계속 위헌 부분만 말씀하시면서 그런 전쟁 행위들을 방지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행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헌법……

아니,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동일 내용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농후한 이런 입법을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접경지역의, 배준영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법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북한 측의 대응에 대해서 주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입법 외에,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전가를 하시는데 집권 여당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위헌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전 전례가 있는데 이것을 남북관계발전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제명만 바꾸고 동일 내용을 다시 입법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할 겁니까? 여러분들 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무시하고 불복하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연희 위원 저도 한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근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복기왕 제가……

○송기현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복기왕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어떤 법률이 어떤 행위의 규제가 위헌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 판단할 때는 해당하는 법이 어떤 법익을 지키려고 하는 법인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위헌결정이 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으로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공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비행금지구역에 비행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법익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규제의 수단을 무엇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래서 어쨌든 항공안전에 관한 문제, 비행금지구역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논의를 좀 더 해서 비행금지구역이 특별히 이 접경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 정도 규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북관계발전법이라든지 남북관계에 관련한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 그리고 저희는 항공안전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단 부분도 항공안전 측면에서 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또 유발을 해서 오물풍선이 북한에서 넘어온다 이런 측면, 인과관계의 측면에서도 좀 우려되는 바는 지금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의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현 소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위현이다, 아니다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위현 소지를 좀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판단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재강·홍기원·윤종오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무게 제한을 폐지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승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 풍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과잉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복기왕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목적이라든지 지역 이런 부분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기왕 의원님 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잠시만.....

○**소위원장 복기왕** 예.

○**김도읍 위원** 차관님 그 말씀 잘 하셨고 송기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를 과잉해서 침해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또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더더군다나 항공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정부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토론 때는 정부도 안을 좀 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토론을 해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회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오늘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보통 법안을 심사하면 정부의 수정의견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수정의견 차원의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보고 검토해 볼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복기왕**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위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여러 말씀 중에서 특히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26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위헌 소지하고 관련해서.

**○전문위원 임종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기왕 의원안에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단 등의 살포’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단 등의 살포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한 바는 있습니다, 결정에서.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률이 달라졌고 그리고 실제로 규제하는 수단이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의 적용 관계를 다 살펴서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른 개정안들과 달리 복기왕 의원안의 경우에는 현행 규제를 그대로 최대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말씀 드린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위헌성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이것이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충돌을 야기하는 이런 가운데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사실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었습니다. 다행히도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런 행위들이 멈춰져 있고 그리고 그동안 대북전단을 뿐었던 그 당사자들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언제 또다시 정국 변화에 따라서 이 전단이 살포될지 모르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결림돌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사소한 충돌이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상존하고 그 사소한 충돌의 출발이 대북전단일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국토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항공안전법을 통해서 일부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저도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반드시 이 법안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토위가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법률안들을 처리했던 관례를 존중해서 오늘은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소위를 운영할 때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접점을 좁힌 이런 가운데서 합의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7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예.

**○윤종오 위원** 여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여러 표현을 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그런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으니 지금 국토위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외통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열어 줬었으면 국토위까지 안 왔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김도읍 위원 소수당은 힘도 못 쓰는데 자꾸 국민의힘을 평계를 대요.

○윤종오 위원 그 위원장님께서 버티고 있으시니까 법안을 이렇게 저희들이 발의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김도읍 위원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왜 국민의힘을 자꾸 끌어들여요?

○윤종오 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법안을 통과 못 시키고 접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 다음번 교통소위에서 반드시 다시 상정해서 처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나머지 오늘 준비한 안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관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장관도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있고 해서 다음번 소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 ○출석 위원(12인)

김도읍 배준영 복기왕 송기현 신영대 염태영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이연희  
정점식 정준호

### ○첨가 위원(1인)

손명수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임종수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교통물류실장 염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물류정책관 김근오

공항정책관 김홍락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수상

광역교통운영국장 장순재